형법 일부개정법률안 (인요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437 발의연월일: 2024. 7. 31.

발 의 자:인요한・구자근・성일종

최수진 • 우재준 • 박준태

안철수 · 강승규 · 이인선

권영세 · 김도읍 · 조정훈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'적국'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 및 군사상기밀을 '적국'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음.

그러나 국제정세의 다변화에 따라 과거 통용되는 간첩행위의 양상 이 상당 부분 변화되어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변화되고 있음.

따라서, 다원화된 국제환경 속에서는 '외국' 및 '외국인' 또는 '외국인 의 단체'를 위하여 국가기밀·군사상의 기밀을 탐지·수집·보관·누설·중계하는 행위도 국가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를 수정할 필요가 있고 '간첩 행위'와 '군사상의 기밀'의 의미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.

또한, 산업안보도 국가안보의 중요한 요소로, 국가 중요기술인 국가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을 기망·절취·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「형법」상 간첩죄를 적용하여 국가 중요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98조).

법률 제 호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. 같은 조 제1항 중 "敵 國을"을 "적국, 외국 및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"로, "間諜하거나 敵國"을 "국가 기밀(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 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 * 물건 ·시설 또는 지식으로 분류된 사항을 말한다)을 탐지·수집·보관·누 설·전달·중계하는 행위(이하 "간첩"이라 한다)를 하거나 적국, 외국 및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단체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軍事上의 機密"을 "군사상의 기밀(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군사상으로 보호할 필 요가 있는 것으로 법령에 따라 기밀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에 한 정하지 아니하고. 외부에 알려지지 아니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에 상 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을 말한다)"로, "敵國에 漏泄한"을 "적국, 외국 및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탐지 · 수집 · 보관 · 누설 · 전 달・중계하는 행위를 한"으로、"前項"을 "제1항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8조(간첩)

③ 산업상의 기밀(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을 말한다)을 적국,

외국 및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단체에 기망·절취·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혀 행

개 정 안

第98條(間諜) ① <u>敵國을</u> 爲하여 <u>間諜하거나 敵國</u>의 間諜을 幇 助한 者는 死刑, 無期 또는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.

제98조(간첩) ① <u>적국, 외국 및</u>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-----국가 기밀(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사실·물건·시설 또는 지식으로 분류된 사항을 말한다)을 탐지·수집·보관·누설·전달·중계하는 행위(이하 "간첩"이라 한다)를 하거나 적국, 외국및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단체

② <u>軍事上의 機密</u>을 <u>敵國에 漏</u> 泄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. ② 군사상의 기밀(국가안전보 장을 위하여 군사상으로 보호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법령에 따라 기밀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에 한정하지 아니하고, 외부에 알려지지 아니하는 것 이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이 익이 있는 사항을 말한다)--적 <신 설>

국, 외국 및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탐지·수집·보관·누설·전달·중계하는 행위를 한-----

----.

③ 산업상의 기밀(국가핵심기 술 및 방위산업기술을 말한다) 을 적국, 외국 및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단체에 기망·절취· 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